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 - 66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7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학교보건법에서 일부 분리되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법령 및 변경된 용어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 개정

-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6조)

·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

→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
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(4개 조문)

· 구청장의 책무(안 제5조),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6조),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(안 제7조), 흡연구역의 설치(안 제9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7. 6. 1. ~ 2017. 6. 21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지원 할”을 “지원할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 구역

제6조제4항 중 “구보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보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해제 할”을 “해제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설치·운영 할”을 “설치·운영할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구청장의 책무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·연구·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<u>지원</u>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구청장의 책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지원할</u> -----.</p>
<p>제6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<u>학교보건법</u>」에 따른 학교 <u>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</u>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<u>구보</u>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보</u>-----.</p>
<p>제7조(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)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</p>	<p>제7조(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) ① ----- -----</p>

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9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,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 해제할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 ① -----

----- 설치·운영할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상위법의 근거법령 및 변경 용어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규칙 개정
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지역보건과 이혜경
연 락 처	02-3153-9054